

래미안 신당2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과 - 7494호(2009.04.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80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6층, 지상 9층 ~ 15층 16개동 9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아파트 일반공급 286세대(신당제6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중 일반공급분)
(3자녀 특별공급 9세대 및 신혼부부 보증자리 주택 특별공급 53세대 포함)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가구별 공용면적			계약 면적	옛주택형표기 (전용+주거공용)	세대 별 대지비분	세대 수	향별	층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시)			
				주거공용 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계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금액		09/9/18	10/1/18	10/5/18	10/10/18	11/2/18	11/6/17				
민 요 주 택	22143-01	2009000225(01)	59.74	19.36	39.92	59.28	119.02	79.10	34.6	83	남서	1층	4	183,667	143,433	327,100	32,710	32,710	32,710	32,710	32,710	32,710	32,710	32,710	98,130		
												2층	3	194,111	151,589	345,70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103,710	
												3층	5	202,421	158,079	360,50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108,150	
												4층	5	202,421	158,079	360,500	72,10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72,100	
												5~9층	20	204,498	159,702	364,200	72,84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72,840	
												10층이상	6	208,710	162,990	371,700	74,340	37,170	37,170	37,170	37,170	37,170	37,170	37,170	37,170	74,340	
												남동	1층	1	185,744	145,056	330,80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99,240
												2층	5	196,188	153,212	349,40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104,820	
												3층	5	204,498	159,702	364,20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109,260	
												4층	5	204,498	159,702	364,200	72,84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72,840	
												5~9층	20	206,632	161,368	368,000	73,6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73,600	
												10층이상	4	210,787	164,613	375,400	75,080	37,540	37,540	37,540	37,540	37,540	37,540	37,540	37,540	75,080	
	22143-02	2009000225(02)	59.95	20.16	40.06	60.22	120.17	80.11	35.05	88	남서	1층	5	183,667	143,433	327,100	32,710	32,710	32,710	32,710	32,710	32,710	32,710	98,130			
												2층	5	194,111	151,589	345,70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34,570	103,710		
												3층	5	202,421	158,079	360,50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108,150		
												4층	5	202,421	158,079	360,500	72,10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36,050	72,100		
												5~9층	20	204,498	159,702	364,200	72,84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72,840		
												10층이상	5	208,710	162,990	371,700	74,340	37,170	37,170	37,170	37,170	37,170	37,170	37,170	74,340		
												남동	1층	5	185,744	145,056	330,80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99,240	
												2층	4	196,188	153,212	349,40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104,820		
												3층	5	204,498	159,702	364,20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109,260		
												4층	5	204,498	159,702	364,200	72,84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36,420	72,840		
												5~9층	19	206,632	161,368	368,000	73,6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73,600		
												10층이상	5	210,787	164,613	375,400	75,080	37,540	37,540	37,540	37,540	37,540	37,540	37,540	75,080		
	22143-03	2009000225(03)	59.98	28.71	40.08	68.79	128.77	88.69	38.80	5	남서	1층	1	189,731	148,169	337,900	33,790	33,790	33,790	33,790	33,790	33,790	33,790	101,370			
												2층	2	200,512	156,588	357,100	35,710	35,710	35,710	35,710	35,710	35,710	35,710	107,130			
												3층	2	209,159	163,341	372,500	37,250	37,250	37,250	37,250	37,250	37,250	37,250	111,750			
	22143-04	2009000225(04)	84.97	22.34	56.78	79.12	164.09	107.31	46.94	16	남서	1층	3	252,731	197,369	450,100	45,010	45,010	45,010	45,010	45,010	45,010	135,030				
2층												4	267,049	208,551	475,600	47,560	47,560	47,560	47,560	47,560	47,560	142,680					
10층이상												2	287,207	224,293	511,500	102,300	51,150	51,150	51,150	51,150	51,150	102,300					
남동												1층	1	255,595	199,605	455,200	45,520	45,520	45,520	45,520	45,520	45,520	136,560				
2층												4	269,969	210,831	480,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144,240					
10층이상												2	290,071	226,529	516,600	103,320	51,660	51,660	51,660	51,660	51,660	103,320					
22143-05	2009000225(05)	84.85	22.73	56.70	79.43	164.28	107.58	47.06	12	남서	1층	3	261,378	204,122	465,500	46,550	46,550	46,550	46,550	46,550	46,550	139,650					
											2층	4	276,258	215,742	492,0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147,600					
											남동	1층	1	264,354	206,446	470,800	47,080	47,080	47,080	47,080	47,080	141,240					
											2층	4	279,178	218,022	497,200	49,720	49,720	49,720	49,720	49,720	49,720	149,160					
22143-06	2009000225(06)	84.98	27.51	56.79	84.30	169.28	112.49	49.21	9	동향	2층	4	277,886	217,014	494,900	49,490	49,490	49,490	49,490	49,490	148,470						
											남동	1층	1	268,846	209,954	478,800	47,880	47,880	47,880	47,880	47,880	143,640					
											남향	1층	4	271,878	212,322	484,200	48,420	48,420	48,420	48,420	48,420	145,260					
22143-07	2009000225(07)	117.00	32.63	78.19	110.82	227.82	149.63	65.46	73	남향	1층	9	358,911	280,259	639,200	31,960	63,920	63,920	63,920	63,920	63,920	223,720					
											2층	8	378,844	295,856	674,700	33,735	67,470	67,470	67,470	67,470	67,470	236,145					
											3층	10	394,847	308,353	703,200	35,160	70,320	70,320	70,320	70,320	70,320	246,120					
											4층	10	394,847	308,353	703,200	70,320	70,320	70,320	70,320	70,320	70,320	210,960					
											5~9층	24	398,833	311,467	710,300	71,030	71,030	71,030	71,030	71,030	71,030	213,090					
											10층이상	12	406,807	317,693	724,500	72,450	72,450	72,450	72,450	72,450	72,450	217,350					

※ 2009.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3 의거)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애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건물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청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점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계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공사비가 미포함되어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에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되며,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계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선택 옵션 판매가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주택형 (전용면적)	구 분	확장공사원가						아트월			품셈 선금액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거실(기본)	거실(확장추가분)	현관	
59.74	확장공 사비 / 아트월 옵션	3,340	-	530	860	-	2,030	520	140	580	10,470
	발코니 샷시	1,050	670	290	460	-	-	-	-	-	
59.95	확장공 사비 / 아트월 옵션	4,030	-	1,260	1,060	-	1,620	530	160	840	12,170
	발코니 샷시	930	750	530	460	-	-	-	-	-	
59.98	확장공 사비 / 아트월 옵션	3,430	-	910	760	-	2,050	510	110	580	10,990
	발코니 샷시	1,050	760	460	370	-	-	-	-	-	
84.97	확장공 사비 / 아트월 옵션	3,770	-	450	830	-	2,770	540	280	840	12,560
	발코니 샷시	1,390	700	530	460	-	-	-	-	-	
84.85	확장공 사비 / 아트월 옵션	3,990	-	850	590	-	2,430	540	340	680	12,450
	발코니 샷시	1,390	800	460	380	-	-	-	-	-	
84.98	확장공 사비 / 아트월 옵션	4,060	-	1,030	830	-	2,930	520	290	680	13,250
	발코니 샷시	1,390	640	530	350	-	-	-	-	-	
117.00	확장공 사비 / 아트월 옵션	4,310	-	990	1,120	1,500	2,820	650	110	890	16,170
	발코니 샷시	1,390	870	460	530	530	-	-	-	-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실별 선택시 미확장부위는 발코니샷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선택 가능
예) 59.74형에서 거실확장만 선택(아트월미선택)할 경우 확장공사비는 5,810,000원임 (거실확장공사비3,340,000원, 거실,안방,침실, 침실2 샷시공사비2,470,000원을 합한 금액)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실지함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함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닌(입주자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일정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동호수 추첨 및 발표
전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009.5.4	강북 래미안 갤러리 / 10:00~14:00	2009. 5. 4 / 강북 래미안갤러리 / 15:00

-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세대)

구 분	거주지역	59.74	59.95	59.98	84.97	84.85	84.98	117.00	계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1	2		1			1	5
	경기도 거주자	1	2					1	4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수도권 거주자	25	26	2					5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효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1)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4.29)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 불가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접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4.29)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 재(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상기 증명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6. 7.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접수 기재)

평점 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영유아	40	40	- 자녀(임양)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0	35		
		10	10		
세대구성(2)	10	10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으로 구성)	
		20	5		
		30	20		
무주택기간(3)	20	20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15	15		
		10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20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15	15		
		10	10		
		5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 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2)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대상 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물량의 30% 범위)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4.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재혼인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여야 함.[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 소득기준 : 100퍼센트는 3,894,709원, 120퍼센트는 4,673,651원
 - ▶ 4인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4,276,642원, 120% : 5,131,970원
 - ▶ 5인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4,384,491원, 120% : 5,261,389원
 - ▶ 6인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5,188,104원, 120% : 6,225,725원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이라 함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수도권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되, 동일 순위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1순위로 청약이 불가

- 입주자 선정방법

- ①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신청자 중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자격입증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지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기 바람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소득입증 구비서류

구 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기관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 조서(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에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

- 상기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9.4.29)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과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4.29)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어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와 계약내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 청약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단, 2009.4.1~2011.3.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해당 청약제한 적용기간 중이라도 민영주택 한하여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 입주자자격 및 신청자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민 영 주 택	1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지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으로 접수되고 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서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2009. 5.6	- 접수 장소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 접수 시간 : 인터넷 청약 08:00~17:30	- 일시 : 2009. 5. 15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및 래미안 홈페이지 - 헬월드 경제신문에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舊주목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2009. 5.7	- 접수장소 : 외환은행 전국영업점 - 접수시간 : 08:00 ~ 16:00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9. 5.8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 (창구 접수시간(09:00 ~ 16:00))
- 3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외환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 (창구 접수시간(09:00 ~ 16:0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 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2)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2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85㎡ 초과 10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함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 9.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자격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 수	가점구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30년미만 미혼세대주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8.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가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청약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 특별공급(3자녀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보급자리 주택)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총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초과된 주택형은 차순위 접수를 받지 않고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구 분	국 민 은 행 (舊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3순위 : 인터넷청약이 불가하며, 창구 청약만 가능함(청약신청장소 : 외환은행)
이용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kbsl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3순위 청약 : 인터넷청약이 불가하며 창구청약만 가능함. (청약신청장소 : 외환은행)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ol2you.com)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외환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작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장 소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외환은행 본/지점	200만원	창구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당첨지발표(2009. 5. 15) 익영업일 이후 (평일 09:00 ~ 16:00)	청약접수한 외환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구비 사항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외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약(청약자 본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5.4 (15:00) 당사 강북 래미안 갤러리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대상은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정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할 경우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사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한 선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동·호수 추첨일시는 당첨자 발표시 기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호수를 제외하 나머지 동·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결정함.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민 은 행	금 융 결 제 원
인 터 넷	이용 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이용 시간	2009.5.15 ~ 5.24 (10일)
전화(ARS)	이용 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 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 701)
	이용 시간	2009.5.15 ~ 5.24 (10일)

계약체결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 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2009.5.20 ~ 2009.5.22 (3일간)	강북 래미안 갤러리 (중로구 유니동 1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심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소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인감도장 •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④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한 자의 경우에 한함) ⑥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건분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② 무허가건축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③ 소형거주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 등) 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출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순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③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3자녀 특별공급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과 달라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건분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함.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9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변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허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장기간보유특례)
 - (현제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제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8.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입주예정자에 대한 응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응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한다.(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호수 분양예금 중 계약금 납입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일 : 2011년 10월말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예정)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 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 기일까지	96,325,580,000 원	제01282009-10-1-00015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파 관련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입사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아파트명	감리구분	업체명	감리금액	VAT구분	비고
레미안 신당2차	건축, 기계, 설비, 토목	(주)도시간축	₩ 3,060,811,486	VAT별도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통신, 소방	(주)건일엠이씨	₩ 580,000,000	VAT별도	
	전기	(주)한국방기술	₩ 585,108,771	VAT별도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대금 납부계좌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유의사항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장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2. 청약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3.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인화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번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절차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건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등으로 시공 중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건본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건본주택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 대지 인접도로 및 부지동측 25m 주도로의 통행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단지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단지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건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 별 위치, 단지레벨차에 따른 용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장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에는 입주자 사전검점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행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건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벽적, 치수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분양가를 산정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장하였으며, 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었으며, 건본주택 참고 바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변적(발코니)은 실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인허가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난간 및 발코니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평면 및 형별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인·허가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계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랩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됨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정)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진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지상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바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 랩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 따라 대지경계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람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드는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정화조(배기구),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 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없이 동의함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음
- 101,104,106,115동에는 정화조배기구가 설치되며, 또한 101동에는 근생시설의 배기연도, 115동에는 커뮤니티시설의 기계실 배기연도가 설치되어 냄새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 될수 있음.
- 발코니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벽체부위에 단차(약 90~100mm)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물천정 깊이가 다소 감소 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원계획은 대관협의결과에 따라 대지레벨, 설치일정, 계획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지동측(25m) 도로는 단지레벨 보다 높아 도로에 면하는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111동~115동)
- 발코니에는 보일러 설치에 따른 배관 및 보일러 연도, 환기구 등이 노출시공되며, 일부 천장마감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의 환기시스템(장비)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03, 106, 108, 111, 112, 113, 114, 115동 세대전면은 2~10m 가량의 용벽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대지남측 현대아파트측에서 단지내부로 연결계단 및 통로가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의 대지 경계는 변경될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및 내부구조, 가구집기류는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수 있음
-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 될 수 있음
- 전용면적 59㎡형(20형평대)의 드레스실/욕실 선택에서 안방 드레스룸 선택세대는 전장고가 욕실과 동일하며 상부세대가 욕실 선택일 경우 전장에 짐걸구가 설치됨
- 면적은 소수점 2째자리 까지 표현되므로 변적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1층세대의 전장고는 2300에서 2400으로 설계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동 계단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기타 사유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음)
- 115동 인접 지하정화조의 관리점검 출입은 지하주차장에서 진입됨.
- 104동의PIT층 주동진입레벨은 필요에따라 도로레벨의 변경에 따라 높아질 수 있음
- 106동남측 및 서측의 조경부위는 경사지에서 단차가 형성된 경사지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에 따라 단지내 동서측 주도로는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일만에 개발해야함
- 단지내 주출입구에서 부출입구에 이르는 단지내 도로 경사는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이 급할 수 있음
- 계약 시 모델하우스 및 분양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실 대지 측량결과에 의한 설계변경,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동의함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명

- 사업주체명 : 신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등록번호 : 201-82-05604)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주택건설사업팀 지정번호 제48호)

건본주택 안내

- 모델하우스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2번지 강북래미안 갤러리[☎ 02-765-3327, 1588-3588]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